

감정평가서

| | |
|-------|--------------------------------|
| 건명 | 주식회사데오테크 소유물건(2024타경566167) |
| 의뢰인 | 인천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재선 |
| 감정서번호 | MRH241017001 |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담보감정평가사 확인은행이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마루한감정평가사사무소

(구분건물)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인)

이서원

| | | | | | | |
|----------------------------|----------------------------|-------------|------------|-------------------------|--------------|-------------|
| 감정평가액 | 칠억육천칠백만원정 (₩767,000,000.-) | | | | | |
| 의뢰인 | 인천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재선 | | 감정평가 목적 | 법원경매 | | |
| 제출처 | 인천지방법원 경매16계 | | 기준가치 | 시장가치 | | |
| 소유자 (대상업체명) | 주식회사데오테크 (2024타경566167) | | 감정평가 조건 | - | | |
| 목록표시 근거 | 귀 제시목록 | | 기준시점 | 조사기간 | 작성일 | |
| 기타 참고사항 | - | | 2024.10.18 | 2024.10.16 ~ 2024.10.18 | 2024.10.18 | |
| 감 정 평 가 내 용 | 공부(公簿)(의뢰) | | 사정 | | 감정평가액 | |
| | 종류 | 면적(㎡) 또는 수량 | 종류 | 면적(㎡) 또는 수량 | 단가 | 금액 |
| | 구분건물 | 1개호 | 구분건물 | 1개호 | - | 767,000,000 |
| | | 이 | 하 | 여 | 백 | |
| 합계 | | | | | ₩767,000,000 |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 | | | | |
| " 별 지 참 조 " | | | | |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의 목적

본건은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소재 "검단일반산업단지" 내 남서측에 위치하는 인천표면처리 센터공장동 제4층 제427호에 대한 인천지방법원의 경매 목적을 위한 감정평가임.

2. 감정평가의 근거

본건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등 감정평가 관련 제 법령 및 감정평가 제이론에 의거 감정평가 하였음.

3. 실지조사 실시기간, 기준시점 및 기준가치

1)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기준시점

본건의 실지조사 실시기간은 2024년 10월 16일 ~ 2024년 10월 18일로 대상물건의 이용상황 및 가격수준 등을 확인하였으며,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의거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인 2024년 10월 18일임.

2) 기준가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감정평가 목적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4. 감정평가의 조건

해당사항 없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5. 대상물건의 개요

| | | | | | | | | |
|-----------|---|-------------|-------------|-------------|--------------------|------------|--------------------|--|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610-1 인천표면처리센터공장동 제4층 제427호 | | | 사용승인 일자 | 2017.03.10 | | | |
| 건물 주용도 | 공장(지식산업센터),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 |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 | | |
| 전체층수 | 지층/8층 | | | 용도지역 | 일반공업지역 | | | |
| 구 분 | | 전유면적 (㎡) | 공용면적 (㎡) | 분양면적 (㎡) | 전용률 (%) | 대지권 (㎡) | 용 도 | |
| 기호 | 해당 층·호수 | | | | | | | |
| 1 | 제4층 제427호 | 243.45 | 198.35 | 441.8 | 55.10 | 79.06 | 공장 (지식산업 센터) | |

6. 그 밖의 사항

가. 본건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등은 귀 제시목록에 의하였음.

나. 본건의 위치확인은 관리사무실에서 교부받은 건축물현황도면 및 집합건축물대장도면을 기준으로 현지 조사한 사정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다. 귀 요청에 의거 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배분하였는 바, 경매 진행 시 참고 바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1. 감정평가액 결정의 방법

(1) 평가방식은 대상물건의 성격·평가목적 또는 평가조건에 따라 비용성의 원리를 따르는 원가방식, 시장성의 원리를 따르는 비교방식 및 수익성의 원리를 따르는 수익방식이 있음.

| 평가방식 | 평가방법 | 평가방법의 적용 |
|------|---------|---|
| 원가방식 | 원가법 | 원가법이란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법으로,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함. 이 때 감가수정은 대상물건에 대한 재조달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또는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원가에서 공제하여 기준시점에 있어서의 대상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을 의미함 |
| 비교방식 | 거래사례비교법 | 거래사례비교법이란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법으로,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함 |
| | 공시지가기준법 | 공시지가기준법이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함 |
| 수익방식 | 수익환원법 | 수익환원법이란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법으로,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함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2) 구분건물의 평가

본 평가에서 구분건물은 제반 입지조건, 주위환경, 층별·위치별 효용도와 건물의 구조, 용재, 부대설비, 시공정도, 현상 및 인근지역 내 유사 구분건물의 거래사례, 평가사례, 인근 가격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대지권을 일체로 한 비교방식(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였으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거 상기 방법에 의해 산출한 시산가액과 다른 감정평가방식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하나, 본건 특성상 전유부분(건물)과 대지권이 일체로 효용을 발생시키는 점 등에 의거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거 주된 방법에 의한 시산가액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2. 감정평가액 산출과정

1) 인근지역 거래사례

(출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KAIS 감정평가정보체계)

| 기호 | 소재지 | 건물명 및 동·호수 | 전유면적 (㎡) | 대지권 (㎡) | 거래시점 | 거래금액 (원) | 전유면적당 단가(원/㎡) | 비고 |
|----|------------|-----------------------|----------|---------|------------|---------------|---------------|----|
| | | | | | 사용승인일 | | | |
| ① | 오류동 1610-1 | 인천표면처리센터 공장동 제5층 제00호 | 243.45 | 79.06 | 2024.04.02 | 762,582,600 | 3,132,399 | 공장 |
| | | | | | 2017.03.10 | | | |
| ② | 오류동 1610-1 | 인천표면처리센터 공장동 제7층 제00호 | 338.97 | 110.08 | 2022.12.13 | 1,081,954,800 | 3,191,890 | 공장 |
| | | | | | 2017.03.10 | |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2) 인근지역 평가선례

(출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 기호 | 소재지 | 건물명 및 동·호수 | 전유면적 (m ²) | 평가목적 | 기준시점 | 평가금액 (원) | 전유면적당 단가(원/m ²) |
|----|------------|-----------------------|------------------------|------|------------|---------------|-----------------------------|
| | | | | | 사용승인일 | | |
| ㉠ | 오류동 1610-1 | 인천표면처리센터 공장동 제5층 제00호 | 354.9 | 경매 | 2024.03.20 | 1,150,000,000 | 3,240,349 |
| | | | | | 2017.03.10 | | |
| ㉡ | 오류동 1610-1 | 인천표면처리센터 공장동 제7층 제00호 | 338.97 | 경매 | 2024.01.05 | 1,093,000,000 | 3,224,474 |
| | | | | | 2017.03.10 | | |
| ㉢ | 오류동 1610-1 | 인천표면처리센터 공장동 제8층 제00호 | 250.49 | 경매 | 2022.09.13 | 777,000,000 | 3,101,920 |
| | | | | | 2017.03.10 |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3) 감정평가액의 산출 및 결정

(1) 적용사례의 선정

동일건물 내의 거래사례로서, 인근 시세수준을 적정히 반영하고 있고 본건과 층별, 위치별, 평형별 효용이 유사하며 건물의 구조와 설비, 관리상태 및 입지조건, 주변환경 등 제반 가격형성요인에서 비교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판단되는 거래사례①을 선정함.

| 기호 | 소재지 | 건물명 및 동·호수 | 전유면적 (㎡) | 대지권 (㎡) | 거래시점 | 거래금액 (원) | 전유면적당 단가(원/㎡) | 비고 |
|----|------------|-----------------------|----------|---------|------------|-------------|---------------|----|
| | | | | | 사용승인일 | | | |
| ① | 오류동 1610-1 | 인천표면처리센터 공장동 제5층 제00호 | 243.45 | 79.06 | 2024.04.02 | 762,582,600 | 3,132,399 | 공장 |
| | | | | | 2017.03.10 | | | |

(2) 사정보정

사정보정이란 감정평가에 있어서 비교사례로 선정한 거래사례에 거래관계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인 동기가 개입되어 있거나 거래당사자가 시장사정에 정통하지 못하여 적정하지 않은 가격으로 거래된 경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가치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상기 선정된 거래사례는 특별한 사정의 개입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사정보정은 필요하지 않음(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3) 시점수정

① 시점수정 기준

- ㄱ. 시점수정이란 감정평가액의 산정에 있어서 거래사례의 거래시점과 감정평가의 기준시점이 시간적으로 불일치하여 가치수준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거래가액을 기준시점의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임.
- ㄴ. 사례는 비주거용 부동산으로서 공업용 부동산임을 감안하여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지역별 자본수익률 오피스(인천)" 활용하여 시점수정치를 산정하였으며, 2024년 2분기 자본수익률은 미발표로 전분기(2024년 3분기) 자본수익률을 연장 적용하였음.

② 시점수정치 내용

| 지 역 | 시점수정치 | 시점수정치 산정 |
|---------------------------|---------|---|
| 인천 (24.04.02~24.10.18) | 1.00638 | 오피스 지역 : 인천 (24.04.02~24.10.18) 2024년 02분기 : 0.29 2024년 03분기 이후 : 0.29 (2024년 02분기 자료) $(1+0.0029*90/91)*(1+0.0029*110/91) \approx 1.00638$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4) 가치형성요인 비교

| 구 분 | 조 건 | 격차율 (본건1/사례①) | 비 고 |
|----------------|---|------------------|---------------------|
| 외부요인 | 대중교통의 편의성, 교육시설 등의 배치, 도심지 및 상업, 업무시설과의 접근성, 차량이용의 편리성, 공공시설 및 편의시설과의 배치, 자연환경(조망, 풍치, 경관 등) 등 | 1.00 | 본건1은 사례① 대비 대체로 유사함 |
| 건물요인 (내부요인) | 시공업체의 브랜드, 단지내 총세대수 및 최고층수,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경과연수에 따른 노후도, 단지내면적구성 (대형,중형,소형), 단지내 통로구조 (복도식/계단식) 등 | 1.00 | 본건1은 사례① 대비 대체로 유사함 |
| 개별요인 (호별요인) | 층별효용, 향별효용, 위치별 효용(동별 및 라인별),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사용권의 크기, 내부 평면방식(베이), 간선도로 및 철도 등에 의한 소음 등 | 1.00 | 본건1은 사례① 대비 대체로 유사함 |
| 기타요인 |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00 | 거래사례 및 평가선례 감안 |
| 누 계 치 | | 1.000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5)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산출

| 기호 | 거래사례 단가(원/m ²) | 사정 보정 | 시점 수정 | 가치형성 요인비교 | 산정단가 (원/m ²) | 전유면적 (m ²) | 산정금액 (원) | 결정금액 (원) |
|----|-------------------------------|----------|----------|--------------|-----------------------------|---------------------------|-------------|-------------|
| 1 | 3,132,399 | 1.000 | 1.00638 | 1.000 | 3,152,384 | 243.45 | 767,447,885 | 767,000,000 |

Ⅲ. 감정평가액 결정 의견 및 결정 내역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 감정평가 관련 제 법령에 근거하여 비교방식으로 감정평가하되, 인근 유사부동산의 가치수준, 거래사례 및 평가전례와 대상 부동산의 제반 특성, 최근 부동산 가치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아래와 같이 적정하게 최종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 기호 | 소재지 | 건물명·층·호수 | 전유면적 (m ²) | 대지권 (m ²) | 평가액(원) |
|------------|---------------------------|------------------------------|---------------------------|--------------------------|---------------------|
| 1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610-1 | 인천표면처리센터 공장동 제4층 제427호 | 243.45 | 79.06 | 767,000,000 |
| 합 계 | | | | | ₩767,000,000 |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

| 일련 번호 | 소재지 | 지 번 | 지 목 및 용 도 | 용도지역 및 구 조 | 면 적 (㎡) | | 감정평가액 | 비 고 |
|------------|---|-----------------------------------|--|------------------------------|-----------|----------|-----------------------|--------------------|
| | | | | | 공 부 | 사 정 | | |
| 1 가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가람로 14 | 1610-1 인천표면 처리센터 공장동 | 공장 (지식산업 센터), 지식산업 센터 지원시설 (제1종 2종 근린생활 시설) |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8층 | | | | |
| | | | | 지1층 | 17,112.15 | | | |
| | | | | 1층 | 13,269.96 | | | |
| | | | | 2층 | 12,225.65 | | | |
| | | | | 3층 ~ 5층 각 | 13,143.74 | | | |
| | 동소 | 1610-1 | 대 | 일반공업지역 | | 23,146.9 | | |
| | | | | (내) 철골콘크리트구조 제4층 제427호 | 243.45 | 243.45 | 767,000,000 | 비준가액 공용면적 포함 |
| | | | | 1 소유권대지권 | 79.06 | 79.06 | | |
| | | | | --- | --- | | | |
| | | | | 23,146.9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767,000,000.- | |
| | | | 이 | 하 | 여 | 백 | | |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건물의 구조 (4) 이용상태
-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 등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소재 "검단일반산업단지" 내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업용 부동산이 밀집한 산업단지로서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구조 8층 건내 제4층 제427호로서,
(사용승인일자:2017.03.10)

외벽: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패어그라스창 임.

(4) 이용상태

공장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시설, 승강기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이 설비되어 있음.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건물의 구조 (4) 이용상태
-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 등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가장형 토지로서, 현황 공장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25미터 도로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반공업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뷰티폴파크) , 대로3류(폭 25m~30m)(접합), 가축사육제한 구역(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749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반산업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1)임대관계

-

(2)기타

-

광역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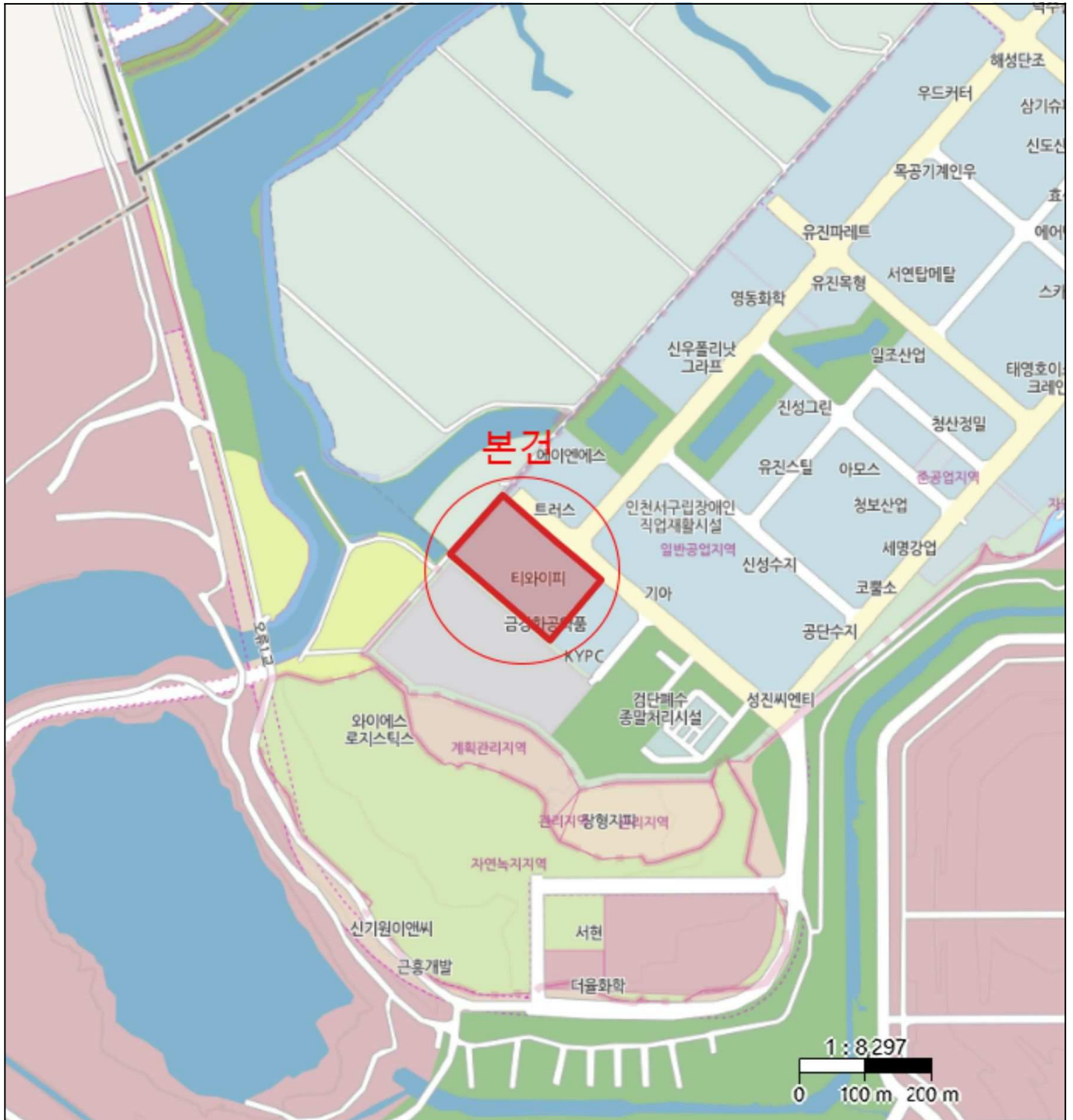
| | |
|-----|---|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610-1 인천표면처리센터공장동 4층 427호 |
|-----|---|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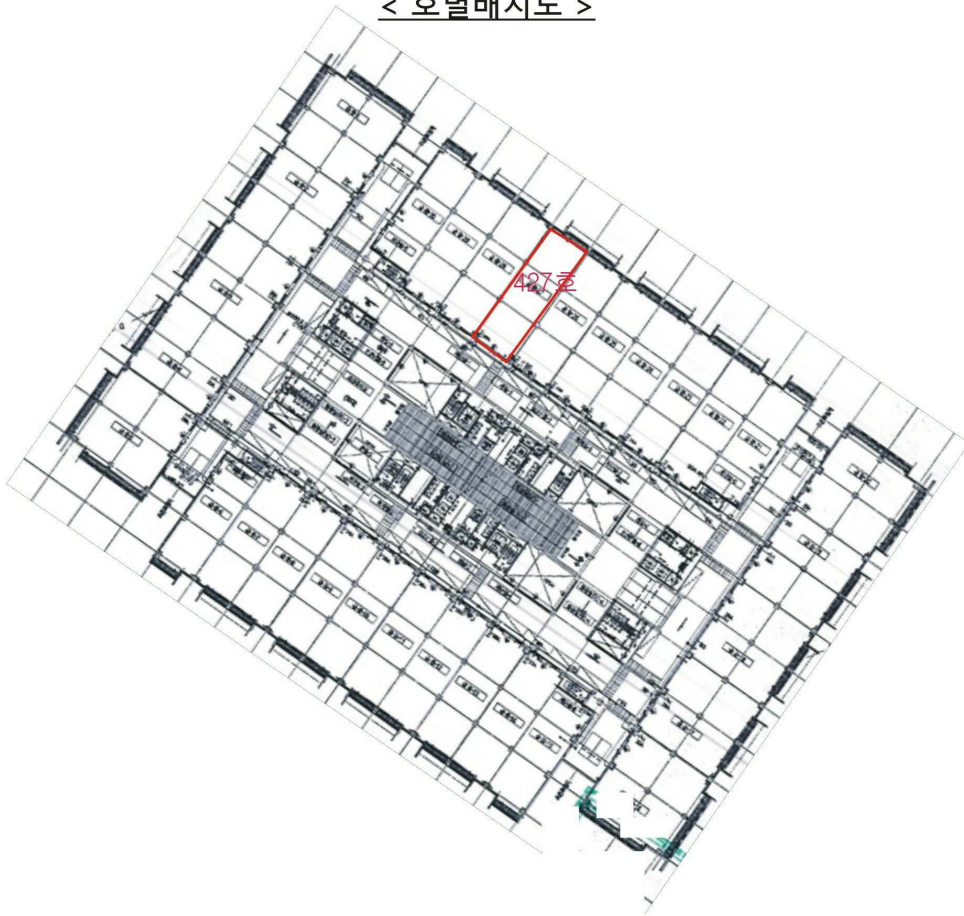
| | |
|------------|---|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610-1 인천표면처리센터공장동 4층 427호 |
|------------|---|



건 물 개 황 도

Non Scale

< 호별배치도 >



본건 (오류동 1610-1 인천표면처리센터공장동 제4층 제427호)

| 임대상황 | 임대부분 | 임차인 | 임대내역 | | 비 고 |
|------|---|-----|--------|------|-----|
| | | | 임대차보증금 | 월임대료 | |
| | 본건전체 | | 임 대 | 미 상 | - |
| | 합 계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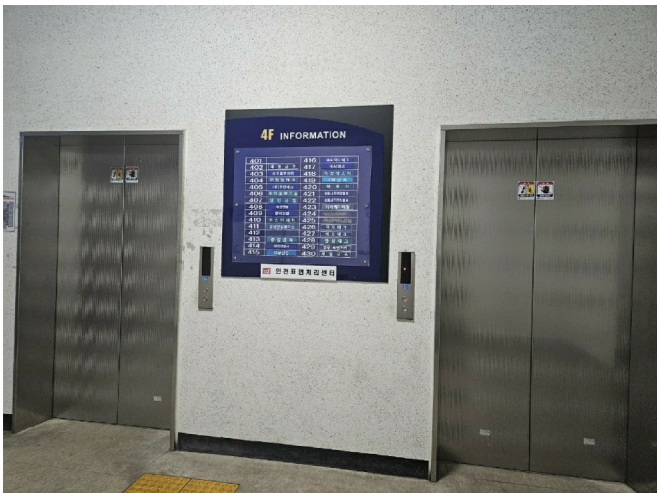




427



4



4 E/V



4 E/V